

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 가능 해역 및 기간(제4조제3항 관련)

해역	기간
1. 인천·경기도 연안 인천항, 영종도, 용유도, 덕적도, 이작도, 풍도, 서산군 화곡리를 차례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	3. 1 ~ 12. 31
2. 강원도 연안 해안선으로부터 7마일 이내의 해역	1. 1 ~ 12. 31.
3. 충청남도 연안 천수만	1. 1 ~ 12. 31
4. 전라남도 연안 여사만, 가막만, 광양만	1. 1 ~ 12. 31
5. 경상북도 연안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내의 해역	1. 1 ~ 12. 31
6. 경상남도 연안 진주만, 고성만, 진해만	1. 1 ~ 12. 31
7. 그 밖의 해역 해상의 기상상황이 출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만 또는 도서 주위의 해역	1. 1 ~ 12. 31